

수원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나12363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이세원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2. 12. 15.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합31244 판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B 사이에 주식회사 C의 주식 300,000주에 관하여 체결된 2020. 1. 7.자 및 2020. 2. 27.자 각 주식매매변경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제2, 3차 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판결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를 ‘A’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3차 변경계약을 통해 B이 A에 7억 9,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가 B으로 하여금 주식을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매매잔금에 맞추어 매매주식 수를 축소하는 형태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B의 실질적인 책임재산 감소가 있었다거나 공동담보의 부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A와 B이 매매주식 수를 축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합의해제에 해당하는데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주식회사 A와 B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위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동기, 판사 강선아, 판사 신동주